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0. 29.(화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주택정책과	담 당 자	·과장 이명섭, 사무관 최민석 ·☎ (044) 201-3324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매일경제 등 10.29) >

> ◈ 부산·남양주·고양 조정대상지역 풀리나...내달 초순 논의
> - 3개 시, 국토부에 해제 공식 요청...읍·면·동 단위 부분 해제 가능성
> - 내달 초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상한제 지역 선정과 동시 해제 검토

□ 최근 부산 해운대구·수영구·동래구, 경기 고양시·남양주시 **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**이 있었으나, **해제 여부**에 대해서는 **결정된 바 없습니다.**

○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「주택법 시행규칙*」에 따라 향후 **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**될 예정입니다.

*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: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「주거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최민석 사무관(☎ 044-201-33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